

의안번호	2216750
의 퇴 인	위성곤의원
회 답 일	2026.6.17.
추계번호	26D0841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4조의7 (제주과기원에 대한 제주자치도 의 지원)	-제주자치도는 제주국제과학기술원(이하 “제주과기원”이라 함)에 근무하는 교원, 연구원 등의 정착을 위하여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		-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입도로,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-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의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기금을 설치·운용하거나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-제주자치도는 상기 규정 사항 외 제주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지원 범위와 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함	재량규정
2	안 제234조의8 (출연금)	-국가·제주자치도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주과기원의 설립·건설·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출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재량규정
3	안 제234조의9 (연구지원을 위 한 출연금 특례)	-국가는 제주과기원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연구비 총액을 포괄적인 출연금 형태로 지급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의무규정
4	안 제234조의 10(보조금)	-국가는 제주과기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234조의 12(국유재산·공 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)	-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주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,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,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234조의 13(개발센터의 지원 특례)	-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¹⁾ (이하 ‘개발센터’라 함)는 제주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지 조성, 정주지원시설의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과기원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부칙 제2조 (설립준비)	-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제주과기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함 -제주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음	의무규정

1) **현행법 제166조(설립)**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.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34조의7(제주과기원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34조의8(출연금)	
3	안 제234조의9(연구지원을 위한 출연금 특례)	
4	안 제234조의10(보조금)	
5	안 제234조의12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)	
6	안 제234조의13(개발센터의 지원 특례)	
7	안 부칙 제2조(설립준비)	제1호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제주과기원의 교원, 연구원 등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,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, 출연금·보조금 지급 등을 규정하여, 이에 따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정주환경 조성, 기반시설 설치 및 기타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출연금의 지급·사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보조금에 대

현행법 제182조(자금의 조달)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.

1.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2.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
3. 차입금(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4. 수익사업의 수익금
5. 그 밖의 수입금

하여는 ‘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’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과기원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 범위, 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- 참고로, 현재 설립·운영 중인 한국과학기술원, 광주과학기술원,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울산과학기술원에 대한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4대 과학기술원 출연금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3년		2024년		2025년		2026년	
	국가	지자체	국가	지자체	국가	지자체	국가	지자체
한국과학기술원	229,089	-	229,743	-	281,896	4,000	322,740	2,000
광주과학기술원	113,416	-	106,397	-	118,530	-	155,456	1,100
대구경북과학기술원	94,925	-	105,943	-	115,597	-	138,564	-
울산과학기술원	89,959	-	91,906	-	108,144	-	145,384	-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- 추가로 4대 과학기술원에 대한 연구비 총액에 대한 포괄적 지원(안 제234조의9 관련) 및 보조금 교부(안 제234조의10 관련)는 없는 상황임
- ※ 개정안과 달리 각 과학기술원법에 연구비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및 보조금 교부 근거 없음

- 한편, 제주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 운영 비용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 외에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, 추계기간 동안 약 9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 - 개정안의 설립준비위원회는 제주과기원의 설립등기 완료 및 사무 인계 이후 해산되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기간을 1년으로 가정
 - 설립준비위원회 정원은 법 상 최대인 7명으로 하고, 이 중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민간위원을 5명으로 가정
 - 설립준비위원회 회의는 연간 6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설립준비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위원회 회의는 2026년에 3회, 2027년에 3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민간위원에게 회의당 30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며,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

- 개정안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 기간 동안 총 9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설립준비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수당 지급 횟수	제주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 (5명×연 3회)	15	15	—	—	—	30
	회의참석수당(b)	0.3	0.3	—	—	—	0.3
	계(a×b)	4.5	4.5	—	—	—	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위와 같이 개정안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,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